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94호 2018. 10. 15(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8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백범로 776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10.0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0-0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66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76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65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0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3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 (가좌동)	20090922	가정동의 동명을 따.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26 (경서동)	20090922	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1-3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5 (원당동)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1-5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3 (원당동)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1-6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1 (원당동)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5-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2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큰시내를 이르는 말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5-15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92번길 4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8-3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10 (석남동)	20090922	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7-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161번길 3-3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대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2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174번길 10-20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3-7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5-22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7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길 34 (원창동)	20171025	원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960m 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32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113 (원창동)	20171025	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5-14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82번길 5-7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447호

## 인천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명: 소공원, 사업명: 신진말소공원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 10.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구 가좌동 556-3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공원)
- 명 칭 : 신진말소공원 조성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소공원 : A=856m<sup>2</sup>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코스모화학(주) 함재경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5. 사업기간 : 2018. 5. 28. ~ 2018. 9. 0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448호

##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2018.9.27.시행)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8년 10월 15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6	인천광역시서구사회적경제일자리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7	인천광역시서구사회적경제일자리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8	인천광역시서구사회적경제일자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9	인천광역시서구사회적경제일자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10	인천광역시서구사회적경제일자리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1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11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2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3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4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5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6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7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8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9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분임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분임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물품운용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6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7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8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9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0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11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12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13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14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계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15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계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청소년과 물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클린도시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관리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2018년 10월 15일	



## ○ 폐기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아동친화정책관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지원과 물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환경보전과 물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	2018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44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0.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른 정비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기구 신설 필요

### 2. 주요내용

-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 주민위원회에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활동 범위 확대(안 제16조)
- 민관협의회 위원장(구청장)을 “1명”에서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민관협치 도모(안 제21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지원협의회를 신설하여 주민·지역위원회를 확대 개편방안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도모(안 제26조 ~ 제30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4,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으로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 확대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 기구 신설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 나. 주민위원회에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활동 범위 확대(안 제16조)
- 다. 민관협의회 위원장(구청장)을 “1명”에서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민관협치 도모(안 제21조)
-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지원협의회를 신설하여 주민·지역위원회를 확대 개편방안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도모(안 제26조 ~ 제3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과정”을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조 중 “시”를 “등 예산과정에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연임은 2회까지만 가능하며,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제21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과 주민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그 밖의 사항”을 “참여예산 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7조(기능)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3. 그 밖의 지원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원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원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원협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원협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앞에 “제6장 그 밖의 사항”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u>과정</u>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p> <p>① (생략)</p> <p>②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u></p>	<p><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등 예산과정</u>----- ----- ----- ----- -----</p> <p>제4조(법령준수 의무) ----- <u>등 예산과정에서</u> ----- ----- ----- ----- -----</p> <p>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u> <u>의 연임은 2회까지만 가능하며,</u></p>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신 설>

<신 설>

회 -----  
 -----  
 -----.

제5장 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7조(기능)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신 설>

개선방안 강구

3. 그 밖의 지원협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협회를 대표하고, 지원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원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30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원협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원협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6조</u> ~ <u>제30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그 밖의 사항</u></p> <p><u>제31조</u> ~ <u>제35조</u> (현행 제26조부 터 제30조까지와 같음)</p>
--	--